제222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2016. 12. 05. ~ 12. 20.)

일 반 의 안

거 창 군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2016 -	해죽순산업 공장 투자유치 지원계획 동의안	3
2016 -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2016 -	가칭 (주)경남항노화웰니스 설립 출자안	29
2016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38

가칭 (주)경남항노화웰니스 설립 출자안

의안 번호 2016 -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안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항노화 산업 발전 및 낙후된 서북부권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 창출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산업과 원외 탕전원이 제기됨.

☞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원활한 수익 분배를 위해 주식회사 모델의 전담법인이 필요

2. 출연개요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O 대 상: 가칭 ㈜경남항노화웰니스(대표 미정)

○ 사 업 비 : 자본금 500백만원

- 도 100, 거창·함양·합천·산청 각 100백만원

○ 소요내역

- 초기 투자비(20백만원) / 인건비(340백만원),

- 법인 세금(20백만원) / 경상경비 등(120백만원)

○ 201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백만원)

사업기간	2016년 예산액	2017년 요구액*			재	٤	원	별				
			계	국	비	도	刊	군	비	7]	타	
	2017년	-	100	100		-		-		100		-

O 사업내용

- 웰니스 관광사업: 거창·함양·합천·산청을 권역으로 하는 "웰니스 + 의료 + 체류관광 + 항노화 제품"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 원외 탕전원 사업

·전국 공공 최초 HACCP·GMP 인증 탕전 시설 건립

·"파종-수확-검사-탕전" 검증으로 전국 탕전원과 차별화

※ 원외탕전원 건립사업비(17억원)는 경남도와 산청군에서 50%씩 부담하여 설치하고 운영은 하나의 법인에서 통합운영

3. 부서의견

- 함양군과 산청군에 비해 항노화 웰니스 사업분야에 대해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하는 우리군으로서 권역으로 추진하는 웰니스 관광사업은 동반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며,
- 원외 탕전원 사업 또한 4개군에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리군은 새로운 약초 소비원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 제고의 기회로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참고사항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1

○ 관계 법령 : 붙임 2

○ 출자금 배정 요청공문 및 전담법인 설립·운영 관련 회의자료 : 별첨

㈜경남항노화웰니스

서리 그 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칙 :						전화번호 :		
설립근거	규칙 :							홈페이지 :	
주요연혁	- 신규 조직(2017년 2월 시				준공) 기관형태 (출자, 출연)				
인원현황 ('16.10.	계				정규직			비정규직	
현원기준) '16.11월 정원확보 추진계획임	12명 (계획)			명				円の	
	직 책 성 명 (직책명) (익명처리) 이사장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임 원	(당연직) 상임이사								
('16.10.기준)	비상임이사								
	감사								
주요기능	탕전원,	탕전원, 웰니스운영·관광마케팅 운영							
자본금 ^{1」} (단위:백만원)		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	
	예산액 ^{2」}						부채	-	
	지자체 지원액 ^{3」}						자본 ¹ 」	-	
경영성과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단위:백만원) '15.12.31기준									

관 런 법 령

□ 지방까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설립 목적
- 2. 주요 업무와 사업
-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행정자치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





'16.10.13(목) 14:00 경남도청 서부청사 소회의실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위한 전담 법인 설립운영 관련 회의 자료[요약]



웰니스 및 원외 탕전원 추진 위한 전담 법인 설립·운영 관련 회의 자료(요약)

🔲 법인 설립 계획 (안)

- **상호명칭** : ㈜ 경남항노화웰니스 (주식회사 모델)
- 위치/규모 : 산청군 소재 한방약초연구소 인근 / 330m² 정도(약 100여평)
- O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운영인력 : 12명 정도(도·4개군 파견 6, 탕전원, 웰니스 운영·관광마케팅 6)
 - ※ 4개 부서(기획총괄부, 탕전원운영부, 웰니스사업부, 마케팅부) 구성계획
- 자본금 : 5억원(도·군별 각 1억원 출자)
 - 초기 투자비(약 2,000만원), 연간 인건비(3억 4천만원) 법인 세금(약 2,000만원), 경상경비(3,400만원, 인건비 10%) 등
- 진행현황 : 「웰니스 관광 및 원외 탕전원 운영 위한 한방 웰니스 전담 운영기관 설치 검토」지사님 방침 결재 完('16.10.6)

🔲 추진 경위

- O (추진 배경) 항노화 산업 발전 및 낙후된 서북부권 소득 증대를 위해 성과 창출 사업으로 웰니스* 관광산업 및 원외 탕전원** 제기
- O (필요성) 사업성 확보 및 지역 경쟁력 강화가 가능하며, 원활한 수익 분배를 위해 주식회사 모델의 전담 법인 필요
 - 신속한 의사결정, 설립·폐지가 용이하고 전문가 영입이 가능하며, 수익 배분이 가능하다는 점(재단법인은 불가)에서 주식회사가 적합
- 지역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 큰 기여 도모

이 주요 대상 사업

① 웰니스 관광 산업

- O 위 치 : 서북부권 4개군 등
- O 사 업 비 : 5억원(도비 1, 군비 4)
- 사업내용: "웰니스 + 의료 + 체류관광 + 항노화 제품" 연계 관광객 유치 ※ 한방·해양 특화 웰니스: 명상·기체험·산림욕·스파·해양레저·트레킹 등
- 단계별 추진 내용
 - (1단계) 지역별 차별화 된 콘텐츠 발굴 및 운영·홍보 전담 조직 구성
 - (2단계) 타깃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국내 관광객 중심* 유치
 - * 도내 민간기업 \cdot 관공서 연수 \rightarrow 전국 기업 \cdot 관공서 연수 \rightarrow 가족 \cdot 동호회 확장
 - (3단계) 한방·해양 연계 웰니스 홍보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② 웰니스 관광 산업

- O 위치/규모: 산청군 한방약초연구소 인근, 약 660 m²
- O 사 업 비: 17억원
 - GMP시설, 탕전시설, 운영 전산시스템 등
- O 사업내용: 우수시설 + 청정약초 + 유의태 청정수 + 약초검증 활용
- 전국 공공 최초 HACCP·GMP 시설 건립
- 지리산 청정약초 활용, 유의태 청정수 탕전 등 경쟁력 확보
- 유관기관(한방약초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연계 경남도 공인 검증
- ☞ "**파종 수확 검사 탕전**" 검증으로 전국 탕전원과 차별화

4개 군 협조 사항

① 자본금 출자 관련

- 도-군별 각 1억원 출자금 확보 위한 '17년도 본예산 편성('16.10월)
- 도-4개군 출자협약 체결로 조기 재정지원 및 추진의사 확보('16.11월)

【 출자 협약 체결 (안) 】

▷ 일 시 : '16.11월 초(예정)

▷ 참 석 자 : 도지사, 산청군수, 함양군수, 거창군수, 합천군수

▷ 주 요 내 용

·법인 설립 시 도 - 군별 각 1억원 자본금 출자 합의

•도-군별 전담 법인 정식 파견 공무원 별도 정원 확보

·추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적극 협조

② 인력 확보 관련

- 전담 법인 파견 공무원 별도 정원 확보 추진('16.11월~)
- 군 소속 문화 해설사 포함 현지 사정에 밝은 가이드 연계 투입('17.3월~)
- 원외 탕전원 한약 조제 담당 한약사 고용 및 전담 법인 파견(산청군)

③ 행정지원 사항 관련

- 경남도 전담 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절차 수행
- 경남도 설립 및 4개 군 출자 구조로 郡 별도 조례 제정 절차 無
 - ※ 군별 자체 조례 내 별도 필수 전치 사항이 있는 지 검토 要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6 - 제출년월일 : 2016. 11. 제 안 자 :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한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높은 수준의 천적생산 기술을 활용을 목적으로 위탁 운영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나. 위 치: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다. 규 모

- 천적생태과학관 1.040m²(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사육온실 : 2동(432 m²)
- 곤충체험 및 사육온실 : 2동(484 m²)
- O 천적사육온실 주변 조경시설물

라. 위탁업무 범위

- O 천적 생태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관리
- O 천적교육 및 전시·홍보
- O 천적곤충표본 제작
- O 천적사육온실 관리 및 천적생산 공급
- O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마. 그간의 추진사항

- 2011년 10월 25일 : 천적생태과학관 개관
- 2012년 0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O 2012년 3월 : 학교 밖 창의체험기관으로 선정(27,500천원)
- 2013년 09월 ~ 현재 : 천적 생산 및 공급(4품목, 18,000병)
- O 2014년 9월 : 16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O '15년 02월 : 천적생산 및 보급을 위한 온실 1동(240㎡)준공
- O 2016년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 천적생태과학관 방문객 현황 : 95,550명(2011년 ~ 현재까지)

바. 운영계획

- O 재위탁 운영
 - 수탁기관: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 (대표이사 구덕서)
 - 위탁기간 : 2017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3년간)
 - 위탁내용 :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시설관리 및 천적생산 농가 공급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 축적된 천적 지식 및 고도의 천적생산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을 널리 알릴 수 있고 천적생산 보급으로 친환경농법 실천에 기여

나. 관계법령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조, 제2조, 제3조, 제2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운영위탁)

다. 향후일정

- O 위·수탁 계약 체결 : 2016. 12.
- O 위탁 운영: 2017. 1. ~ 2019. 12.

라. 소요예산

- 위탁운영비(군비) 2017년도 본예산 반영 : 190,000천원
- 인건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재료비, 부가세 부분만 지원함 으로 58,900천원 예산절감
 - ※ 2016년도 위탁운영비 248,900천원
- O 과학관 운영: 경남 과학교실 운영사업 도비 신청 (20,000천원)

마. 위탁운영 계획안 : 붙임 참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계획

천적을 주제로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기 위함

1. 법적근거

- 「과학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5조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2조(운영위탁)

2. 시설현황

- 시 설 명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 위 치 : 거창읍 거함대로 3372-60 사과테마파크 부지 내
- 규 모: 2,347m², 2,454백만원(국-기금 1,000 / 군 1,454)
 - 천적과학관 : 1,040 m²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생산 온실 : 비닐온실 4동 1,044 m²
 - 곤충체험 온실 : 유리온실 1동 263 m²

3. 그간의 추진사항

- 2011년 10월 25일 : 천적생태과학관 개관
- 2012년 01월 : 전문과학관 등록(경남 제4호)
- 2012년 3월 : 학교 밖 창의체험기관으로 선정(27.500천원)
- 2013년 09월 ~ 현재 : 천적 생산 및 공급(4품목, 18,000병)
- 2014년 9월 : 16개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운영
- O '15년 02월 : 천적생산 및 보급을 위한 온실 1동(240m²)준공
- 2016년 6월 : 최우수과학관상 수상(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 천적생태과학관 방문객 현황 : 95,550명(2011년 ~ 현재까지)

4. 위탁추진 계획

□ 재위탁 결정

- 수탁업체 : (사)천적이용정보교류센터(대표이사 구덕서)
- O 수탁업무: 천적생태과학관 운영, 시설관리 및 천적 생산 공급
- O 수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간)

□ 위탁범위

- O 천적생태과학관 시설물 및 전시시설 유지·관리
- O 천적교육 및 전시·홍보
- O 천적곤충표본 제작
- O 천적사육온실 관리 및 천적생산 공급
- O 곤충체험·사육온실 및 주변 조경시설물 관리
- O 기타 천적생태과학관 관리 필요에 따라 지시하는 사항

□ 선정 기준

- O 천적생산 기술을 갖추고 농가 보급이 가능한 단체
- O 천적생태과학관 시설 관리 및 천적을 활용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 영이 가능한 단체

□ 향후 추진일정

- 협약체결 : 2016. 12.
- O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 운영: 2017.01.01. ~ 2019.12.31.

5. 소요예산

○ 2017년 위탁사업 운영비 190,000천원

6. 기대효과

- O 다양한 과학체험, 볼거리 제공으로 교육 및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
- O 천적공급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관 런 법 령

□ 과악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 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조례로 정할 수 있다</u>. <개정 2013.1.23.>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쪼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 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 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거창천적생태과약관 관리 및 운영쪼례

제12조(운영위탁)

-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